

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

www.LH.or.kr

2013. 3. 29

▶ 건축물의 용도

구 분	계 획 내 용
허용용도	•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(기숙사제외) •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, 복리시설
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창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•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

▶ 건축물의 규모

구분	규모	대지면적(㎡)	세대수(호)	건폐율(%)	용적율(%)	최고층수
B-2	60-85㎡	26,301	394	30	165	평균18층 이하
S-2	60-85㎡	45,407	681		165	
	85㎡ 초과	45,408	532			
	소계	90,815	1,213			

▶ 건축물의 배치

-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주동 배치(지구단위계획도면 참조)

▶ 건축물의 형태

-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권장
-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또는 높이 1.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설치(단,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, 연결녹지에 면한 담장은 높이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설치)
- 부속설비(FRP물탱크 등)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, 냉·난방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함.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

▶ 건축선

- B-2블록 : 건축한계선 1m(중로1-73호선변)

▶ 색채

-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,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
-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(1층- 3층 구간내), 중층부, 상층부(최상 1층-3층 구간내)를 구분하여 색채, 창호, 발코니 등의 구조물,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



LH 한국토지주택공사

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(용호동 4-2)

분양문의 : 055)210-8511, 8499

공사홈페이지 : www.lh.or.kr

※ 본 카달로그에 사용된 이미지 및 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.

※ 구체적인 내용은 분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당신이 그리는 꿈의 신도시!

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

공동주택용지 공급안내



LH 한국토지주택공사

당신이 그리는 꿈의 신도시!

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



▶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

사업지구 북측 인근에 2번국도와 5번국도가 연결되는 현동교차로 소재, 창원시 등으로 연결되는 마창대교가 서측 3KM 지점에 위치하여 교통여건 양호



▶ 우수한 교육여건

지구내 초·중·고등학교 신설 예정, 경남대학교 인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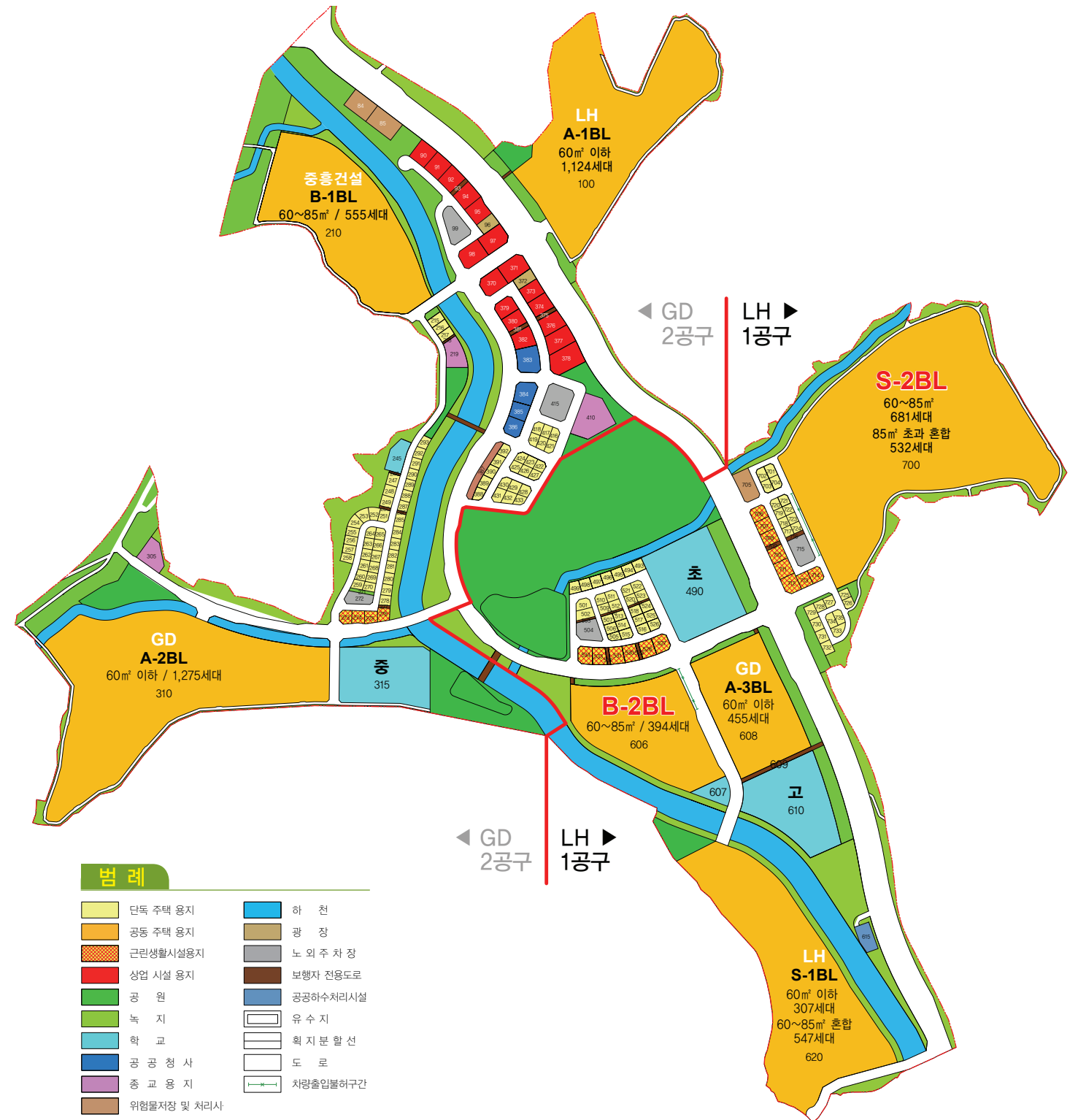
▶ 주변지역 개발 탄력으로 밝은 미래가치

산업단지 및 로봇랜드 조성사업, 마산해양 신도시 개발사업, 가포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미래가치 풍부

▶ 쾌적한 생활환경

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풍부한 녹지, 지구중심을 흐르는 우산천, 배후의 산지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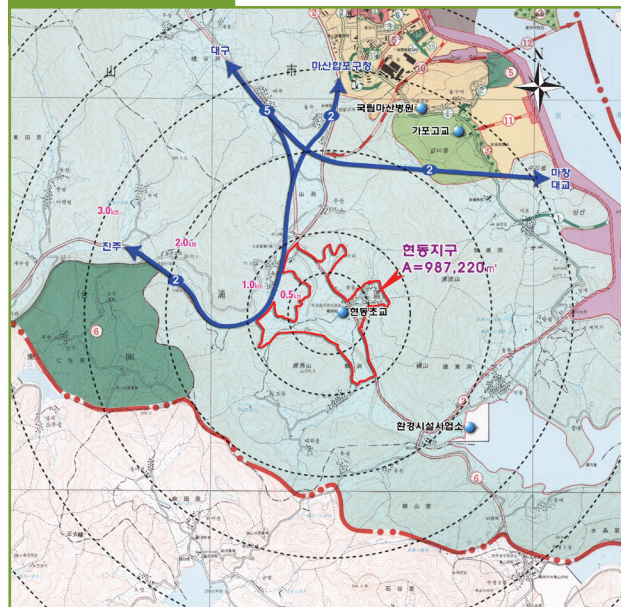
토지이용계획도



조감도



위치도



사업개요

- 위치 :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·우산동 일원
- 면적 : 987천㎡(299천평) ※ LH공구 : 509천㎡(154천평)
- 수용인구 : 17,360인(5,986세대)

▶ 공동주택용지

지번	유형	평형	면적 (㎡)	세대수	건폐율 (%)	용적율 (%)	최고 (평균층수)	공급가격 (천원)	신청예약금 (천원)	대금납부
606 (B-2블록)	분양	60-85㎡ 이하	26,301	394	30	165	평균18층 이하	18,705,460	935,000	5년분할 무이자 (10회납부)
700 (S-2블록)	분양	60-85㎡ 이하	45,407	681		165	평균18층 이하	73,501,540	3,675,000	
		85㎡ 초과	45,408	532						
		소계	90,815	1,213						

※ 토지사용시기 : 대금 완납 후 사용 가능

※ 지구내 계획된 학교용지는 해당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,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으로 인해 학교용지의 위치변경 및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